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635-0101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 민영    |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자 | 경상남도 거주자 (거제시 제외),<br>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 없음    | 없음           | 없음                                     | 미적용    | 민간택지 |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07.24.(금) | 2026.08.03.(월) | 2026.08.04.(화) | 2026.08.05.(수) | 2026.08.11.(화) | 2026.08.17.(월)~<br>2026.08.21.(금) | 2026.08.24.(월)~<br>2026.08.26.(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가입   |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br>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br>(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br>인증서 | 금융<br>인증서 | 네이버<br>인증서 | KB국민<br>인증서 | 토스<br>인증서 | 신한<br>인증서 | 카카오<br>인증서 |
|---------|-----------|-----------|------------|-------------|-----------|-----------|------------|
| APT     | ○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08.03.(월)                                                                                              | 2026.08.04.(화)                                                                                              | 2026.08.05.(수)                                                   | 2026.08.11.(화)                                                                                      | 2026.08.17.(월)~<br>2026.08.21.(금) | 2026.08.24.(월)~<br>2026.08.26.(수) |
| 방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건본주택<br/>(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 )</li> </ul>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32618호(2026.07.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307세대

[특별공급 682세대(기관추천 122세대, 다자녀가구 130세대, 신혼부부 183세대, 노부모부양 39세대, 생애최초 86세대, 신생아 1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 주택<br>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br>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지분 | 총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일반공급<br>세대수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신생아 | 계   |             |                    |
| 2026000331 | 01  | 084.7551A       | 84A  | 84.7551                 | 25.6039    | 110.3590 | 56.0952                    | 166.4542 | 56.1709     | 943        | 94       | 94        | 141      | 28        | 66       | 94  | 517 | 426         | 34                 |
|            | 02  | 084.8937B       | 84B  | 84.8937                 | 26.7405    | 111.6342 | 56.1870                    | 167.8212 | 56.2628     | 280        | 28       | 28        | 42       | 8         | 20       | 28  | 154 | 126         | 10                 |
|            | 03  | 099.8024        | 99   | 99.8024                 | 30.3592    | 130.1616 | 66.0543                    | 196.2159 | 66.1435     | 84         | -        | 8         | -        | 3         | -        | -   | 11  | 73          | 3                  |
|            | 합 계 |                 |      |                         |            |          |                            |          |             | 1,307      | 122      | 130       | 183      | 39        | 86       | 122 | 682 | 625         | 47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84A | 84B | 99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6  | 5   | -  | 21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3  | 4   | -  | 17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4  | 4   | -  | 18  |
|            | 장애인           | 30  | 9   | -  | 39  |
|            | 중소기업 근로자      | 21  | 6   | -  | 2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94  | 28  | 8  | 13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141 | 42  | -  | 18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28  | 8   | 3  | 39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66  | 20  | -  | 86  |
| 신생아 특별공급   |               | 94  | 28  | -  | 122 |
| 합 계        |               | 517 | 154 | 11 | 68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m<sup>2</sup>)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 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중 벽체면적은 전용면적부분과 맞닿은 부분(중심면적-전용면적)으로써 각 해당 세대에 포함되며, 벽체면적 외 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합니다. 다만,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급금액 표

(단위: 원, VAT 포함)

| 약식<br>표기 | 공급<br>세대수 | 동, 라인                                                                                                                                                                              | 층     | 해당<br>세대수 | 공급 금액       |             |            |             | 계약금(5%)   |               | 중도금(60%)    |             |             |             |             |             | 잔금<br>(35%)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계약<br>체결시 | 계약 후<br>30일 내 | 1회<br>(10%) | 2회<br>(10%) | 3회<br>(10%) | 4회<br>(10%) | 5회<br>(10%) | 6회<br>(10%) |             |
|          |           |                                                                                                                                                                                    |       |           |             |             |            |             |           |               | 2026-12-18  | 2027-03-18  | 2027-06-18  | 2028-05-18  | 2028-08-18  | 2029-01-18  |             |
| 84A      | 943       | 101동 1호,2호,3호,5호<br>102동 1호,2호,4호<br>103동 1호,2호,4호<br>104동 1호,2호,3호<br>105동 1호,2호,3호<br>106동 1호,2호,3호<br>107동 1호,2호,3호,5호<br>108동 1호,3호,4호<br>109동 1호,2호,3호,5호<br>110동 1호,2호,3호,5호 | 1     | 18        | 157,832,502 | 328,967,498 | -          | 486,800,000 | 5,000,000 | 19,34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170,380,000 |
|          |           |                                                                                                                                                                                    | 2~3   | 52        | 162,955,250 | 339,644,750 | -          | 502,600,000 | 5,000,000 | 20,13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175,910,000 |
|          |           |                                                                                                                                                                                    | 4~5   | 59        | 165,516,624 | 344,983,376 | -          | 510,500,000 | 5,000,000 | 20,525,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178,675,000 |
|          |           |                                                                                                                                                                                    | 6~10  | 170       | 168,110,420 | 350,389,580 | -          | 518,500,000 | 5,000,000 | 20,925,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181,475,000 |
|          |           |                                                                                                                                                                                    | 11층이상 | 644       | 171,514,778 | 357,485,222 | -          | 529,000,000 | 5,000,000 | 21,45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185,150,000 |
|          |           |                                                                                                                                                                                    |       |           |             |             |            |             |           |               |             |             |             |             |             |             |             |
| 84B      | 280       | 101동 4호<br>102동 3호<br>103동 3호<br>104동 4호<br>105동 4호<br>106동 4호<br>107동 4호<br>108동 2호<br>109동 4호<br>110동 4호                                                                         | 1     | 6         | 157,832,502 | 328,967,498 | -          | 486,800,000 | 5,000,000 | 19,34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48,680,000  | 170,380,000 |
|          |           |                                                                                                                                                                                    | 2~3   | 18        | 162,955,250 | 339,644,750 | -          | 502,600,000 | 5,000,000 | 20,13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50,260,000  | 175,910,000 |
|          |           |                                                                                                                                                                                    | 4~5   | 18        | 165,516,624 | 344,983,376 | -          | 510,500,000 | 5,000,000 | 20,525,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51,050,000  | 178,675,000 |
|          |           |                                                                                                                                                                                    | 6~10  | 50        | 168,110,420 | 350,389,580 | -          | 518,500,000 | 5,000,000 | 20,925,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51,850,000  | 181,475,000 |
|          |           |                                                                                                                                                                                    | 11층이상 | 188       | 171,514,778 | 357,485,222 | -          | 529,000,000 | 5,000,000 | 21,45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52,900,000  | 185,150,000 |
|          |           |                                                                                                                                                                                    |       |           |             |             |            |             |           |               |             |             |             |             |             |             |             |
| 99       | 84        | 104동 5호<br>105동 5호<br>106동 5호                                                                                                                                                      | 1     | 3         | 198,483,889 | 413,696,465 | 41,369,646 | 653,550,000 | 5,000,000 | 27,677,500    | 65,355,000  | 65,355,000  | 65,355,000  | 65,355,000  | 65,355,000  | 65,355,000  | 228,742,500 |
|          |           |                                                                                                                                                                                    | 2~3   | 6         | 204,952,724 | 427,179,342 | 42,717,934 | 674,850,000 | 5,000,000 | 28,742,500    | 67,485,000  | 67,485,000  | 67,485,000  | 67,485,000  | 67,485,000  | 67,485,000  | 236,197,500 |
|          |           |                                                                                                                                                                                    | 4~5   | 6         | 208,202,326 | 433,952,431 | 43,395,243 | 685,550,000 | 5,000,000 | 29,277,500    | 68,555,000  | 68,555,000  | 68,555,000  | 68,555,000  | 68,555,000  | 68,555,000  | 239,942,500 |
|          |           |                                                                                                                                                                                    | 6~10  | 15        | 211,421,558 | 440,662,220 | 44,066,222 | 696,150,000 | 5,000,000 | 29,807,500    | 69,615,000  | 69,615,000  | 69,615,000  | 69,615,000  | 69,615,000  | 69,615,000  | 243,652,500 |

|                                                                                                                                                                                                                                                                                                                                                                                                                                                                                                                                                                                                                                                                                                                                                                                                                                                                                                                                                                                                                                                                                                                                                                                                                                                                                                                                                                                                                                                                                                                                                                                                                                                                                                                                                                                                                                                                                                                                                                                                                                                                                                                                                                                                                                                                                                                                                                                                                                                                                                                                                                                                                                                                                 |  |  |       |    |             |             |            |             |           |            |            |            |            |            |            |            |             |
|---------------------------------------------------------------------------------------------------------------------------------------------------------------------------------------------------------------------------------------------------------------------------------------------------------------------------------------------------------------------------------------------------------------------------------------------------------------------------------------------------------------------------------------------------------------------------------------------------------------------------------------------------------------------------------------------------------------------------------------------------------------------------------------------------------------------------------------------------------------------------------------------------------------------------------------------------------------------------------------------------------------------------------------------------------------------------------------------------------------------------------------------------------------------------------------------------------------------------------------------------------------------------------------------------------------------------------------------------------------------------------------------------------------------------------------------------------------------------------------------------------------------------------------------------------------------------------------------------------------------------------------------------------------------------------------------------------------------------------------------------------------------------------------------------------------------------------------------------------------------------------------------------------------------------------------------------------------------------------------------------------------------------------------------------------------------------------------------------------------------------------------------------------------------------------------------------------------------------------------------------------------------------------------------------------------------------------------------------------------------------------------------------------------------------------------------------------------------------------------------------------------------------------------------------------------------------------------------------------------------------------------------------------------------------------|--|--|-------|----|-------------|-------------|------------|-------------|-----------|------------|------------|------------|------------|------------|------------|------------|-------------|
|                                                                                                                                                                                                                                                                                                                                                                                                                                                                                                                                                                                                                                                                                                                                                                                                                                                                                                                                                                                                                                                                                                                                                                                                                                                                                                                                                                                                                                                                                                                                                                                                                                                                                                                                                                                                                                                                                                                                                                                                                                                                                                                                                                                                                                                                                                                                                                                                                                                                                                                                                                                                                                                                                 |  |  | 11층이상 | 54 | 215,734,114 | 449,650,805 | 44,965,081 | 710,350,000 | 5,000,000 | 30,517,500 | 71,035,000 | 71,035,000 | 71,035,000 | 71,035,000 | 71,035,000 | 71,035,000 | 248,622,5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li><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li><li>•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li><li>• 본 주택은 사업주체에서 '주택형별', '층별', '항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li><li>•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 비용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li><li>•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li><li>•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li>•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li><li>•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li><li>•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li><li>•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지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li><li>•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중도금 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li><li>•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사본 불가)하여야 하며, 또한 제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li><li>•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li>•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li>• 전산 검색 결과 이중 당첨 등 부적격자로 판명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li>•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li><li>• 입주 시 본 아파트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li>•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li><li>•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li><li>•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li>• 청약접수는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li><li>•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ul> |  |  |       |    |             |             |            |             |           |            |            |            |            |            |            |            |             |

- 본 입주자 모집광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광고와 공급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급 계약서가 우선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br>혼인 전<br>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br>(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br>(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 |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 :</b>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                    |                                                                                                      |
|              | 구분                                                                                                                                                                                                                                                                                                                                                                                                                                                                                                                                                                                                                                                                |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b>무효</b> 처리<b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b>부적격</b> 처리                                                                                     |
| 무주택<br>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                    |                                                                                                      |
|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                    |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          |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2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
| 추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남동부지방보훈청 복지증진국</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0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div><div>■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div><div>■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div><div>■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div><div>■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div></div>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div><div>■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div><div>■ ①소득구분</div><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우선공급<br/>(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tr><td>2단계</td><td>일반공급<br/>(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div>※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div><div>※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div><div>■ ②순위</div><table><thead><tr><th>순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tbody></table><div>■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div></div>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br>(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      |    |     |               |                                                                                                       |     |               |                                                                                                                       |     |      |                                                                                                  |    |    |     |                                                             |     |                |
| 비고       | <div><div>■ 자녀기준</div><div>-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div><div>*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div></div>                                                                                                                                                                                                                                                                                                                                                                                                                                                                                                                                                                                                                                                                                                                                                                                                                                                                                                                                                          |                                                                                                                       |      |    |     |               |                                                                                                       |     |               |                                                                                                                       |     |      |                                                                                                  |    |    |     |                                                             |     |                |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2026.07.2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br>140% 이하     | 7,533,764원~<br>10,547,268원 | 8,802,203원~<br>12,323,083원  | 9,326,986원~<br>13,057,779원  | 9,906,264원~<br>13,868,768원  | 10,485,542원~<br>14,679,757원 | 11,064,820원~<br>15,490,74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br>160% 이하     | 9,040,517원~<br>12,054,021원 | 10,562,643원~<br>14,083,523원 | 11,192,383원~<br>14,923,176원 | 11,887,517원~<br>15,850,021원 | 12,582,650원~<br>16,776,866원 | 13,277,784원~<br>17,703,710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0,547,269원~               | 12,323,084원~                | 13,057,780원~                | 13,868,769원~                | 14,679,758원~                | 15,490,748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                                  |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                    |               |      |                                  |      |  |                 |
|                |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r><td>3명</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table>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비고 |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

|     |                                |                                  |
|-----|--------------------------------|----------------------------------|
| 4-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86세대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p>*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p> <p>*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불가함.)</p>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                                                      |                                                                        |    |      |    |  |     |               |                                              |  |     |               |                                                      |  |     |      |                         |
|          |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tr> <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 <td>1단계</td><td>우선공급<br/>(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 <td>2단계</td><td>일반공급<br/>(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 <td>3단계</td><td>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3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br>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div>-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div>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토지                               | <div>-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div> <div>*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div> <div>*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div> <div>*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div> <div>*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div> <div>-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div>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대상자         | <div>■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div> <div>■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div> <div>-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div> <div>■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div> <div>■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div>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div>■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div> <div>■ ①소득구분</div>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우선공급<br/>(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일반공급<br/>(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div>※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div> <div>■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div>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1단계         | 우선공급<br>(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2단계         | 일반공급<br>(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3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비고          | <div>■ 자녀기준</div> <div>-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div> <div>*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div> <div>*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div> <div>*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div> <div>■ 소득기준</div> <div>- 소득 확인 시점</div> <table><thead><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thead><tbody><tr><td>2026.07.24.</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tbody></table>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6.07.2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                  |                       |             |                 |                                              |     |               |                                                      |     |      |                                                                     |
| 2026.07.24.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13,631,203원                | ~14,384,265원                |
| 일반공급 | 130% 초과<br>160% 이하     | 9,793,893원~<br>12,054,021원 | 11,442,864원~<br>14,083,523원 | 12,125,082원~<br>14,923,176원 | 12,878,143원~<br>15,850,021원 | 13,631,204원~<br>16,776,866원 | 14,384,266원~<br>17,703,710원 |
| 추첨공급 | 160% 초과하나,<br>부동산가액 충족 | 12,054,022원~               | 14,083,524원~                | 14,923,177원~                | 15,850,022원~                | 16,776,867원~                |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 구분             | 금액                                                                     | 내용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  |
|  |                |                                                                        |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
|  |                |                                                                        |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  |
|  |                |                                                                        |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
|  |                |                                                                        |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br>■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br>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1순위<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br><div>[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div>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6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                     |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br>선정방법        | ■ 당첨자 선정 순서<br>-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r>-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br>-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br>■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거제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br>■ ②가점<br>-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3">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able>                                                |                     |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초과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부양가족수<br>(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b>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일정 및 장소

| 구분    | 대상자                   |                                     | 일시                                                                        | 장소                                                                                                                                                                                                                                                           |
|-------|-----------------------|-------------------------------------|---------------------------------------------------------------------------|--------------------------------------------------------------------------------------------------------------------------------------------------------------------------------------------------------------------------------------------------------------|
| 청약신청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2026.08.03.(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li> <li>- 주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건본주택<br/>(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li> </ul>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6.08.04.(화)<br>09:00~1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 2순위                                 | 2026.08.05.(수)<br>09:00~17:30                                             |                                                                                                                                                                                                                                                              |
| 당첨자발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                                     | 2026.08.11.(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주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건본주택<br/>(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li> </ul>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서류<br>(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마이데이터<br>(‘청약도움e’)<br>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

|              |                                                                                                                                                                                                                                                                                                                                                                                 |                                                                                                                                                                                                                                                                                                                                  |
|--------------|---------------------------------------------------------------------------------------------------------------------------------------------------------------------------------------------------------------------------------------------------------------------------------------------------------------------------------------------------------------------------------|----------------------------------------------------------------------------------------------------------------------------------------------------------------------------------------------------------------------------------------------------------------------------------------------------------------------------------|
| 공고단지<br>청약연습 |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br>-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br>-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br>-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              | 청약홈                                                                                                                                                                                                                                                                                                                                                                             | -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br>- <b>조회기간</b> : 2026.08.11.(화) ~ 2026.08.20.(목) (10일간)<br>-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br>-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발표<br>서비스 | 문자                                                                                                                                                                                                                                                                                                                                                                              | - 제공일시 : 2026.08.1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br>*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r>-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
|------|------------------------------------------------------------------------------------------------------------------------------------------------------------------------------------------------------------------------------------------------------------------------------------------------------------------------------------------------------------------------------------------------------------------------------------------------------------------------------------------------------------------------------------------------------------------------------------------------------------------------------------------------------------------------------------------------------------------------------------------------------------------------------------------------------------------------------------------------------------------------------------------------------------------------------------------------------------------------------------------------------------------------------------------------------------------------------------------------------------------------------------------------------------------------------------------------------------------------------------------------------------------------------------------------------------------------------------------------------------------------------------------------------------------------------------------------------------------------------------------------------------------------------------------------------------------------------------------------------------------------------------------------------------------------------------------------------------------------------------------------|
| 제출기한 | • 2026.08.17.(월) ~ 2026.08.21.(금) (10:00~16:00) (5일간)                                                                                                                                                                                                                                                                                                                                                                                                                                                                                                                                                                                                                                                                                                                                                                                                                                                                                                                                                                                                                                                                                                                                                                                                                                                                                                                                                                                                                                                                                                                                                                                                                                                                                          |
| 대 상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 제출처  |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건본주택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                                                                                                                                                                                                                                                                                                                                                                                                                                                                                                                                                                                                                                                                                                                                                                                                                                                                                                                                                                                                                                                                                                                                                                                                                                                                                                                                                                                                                                                                                                                                                                                                                                                                                                  |
| 유의사항 | <p>※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6.08.17.(월) ~ 08.21.(금)]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p> <p>※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당사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 입주자는 예비 순번 순으로 서류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호 추천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p> <p>※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p> <p>※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4.(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p>※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p>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p> <p>※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p> <p>※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p> <p>※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p> <p>※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p> <p>※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p> <p>※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br>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br>자) |                           |          |                                                                                                                                                                                                                                                                                                                                                                                                                                                             |
| 공통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li> <li>※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      | ○    |                 | 인감증명서 또는<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li> <li>■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li> </ul>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li>■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br>사실증명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li>-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li> <li>-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li> </ul>                                                                                                                                                                                                                                   |
|      |      | ○               |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해외체류 관련<br>입증서류<br>(단신부임)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li> <li>-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li> <li>-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해외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                     |   |   |                           |                       |                                                                                                                                                                                                                                                                                                                                                                |
|---------------------|---|---|---------------------------|-----------------------|----------------------------------------------------------------------------------------------------------------------------------------------------------------------------------------------------------------------------------------------------------------------------------------------------------------------------------------------------------------|
| 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li> <li>■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li>■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li> <li>■ 공공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임신진단서<br>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li> </ul>                                                                                                                                                                                                                                                          |
| 기존주택<br>처분조건<br>담당자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br>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li> <li>-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소득증빙서류<br>(재직증명서 포함)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li>(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직계존속,<br>배우자의<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임신진단서<br>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li> </ul>                                                                                                                                                                                                                                                                                     |
|                     | ○ |   | 사실증명<br>(신고사실 없음)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확인 가능해야 함</li> </ul>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lt;표3&gt;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 기존주택<br>처분조건<br>담당자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   |   |                   |                       |                                                                                                                                                                                                                                                                                                                                           |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br>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br>또는 손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br>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li> <li>*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li> </ul>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                     |   | ○ | 국민건강보험<br>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br>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 기존주택<br>처분조건<br>담당자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   |   |                      |                       |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br>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li> <li>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소득세 납부<br>입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li> <li>&lt;표2&gt; 참조</li> </ul>                                                                                                                                                 |
|              | ○ |   | 소득증빙서류<br>(재직증명서 포함)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표1&gt;참조</li>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li>(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확인</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임신진단서<br>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li> <li>(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li> </ul>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표3&gt;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                     |   |   |                              |                       |                                                                                                                                                                                                                                                                                     |
|---------------------|---|---|------------------------------|-----------------------|-------------------------------------------------------------------------------------------------------------------------------------------------------------------------------------------------------------------------------------------------------------------------------------|
| 신생아<br>특별공급         | ○ |   | 건강보험<br>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li> <li>-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li> <li>-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소득증빙서류<br>(재직증명서 포함)         | 본인 및<br>만19세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의 소득 입증 서류)</li> <li>※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 배우자 및<br>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li> </ul>                                                                                                      |
|                     | ○ |   | 임신진단서 또는<br>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br/>(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입양관계증명서<br>또는 친양자<br>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표3&gt;참조</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br/>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 기존주택<br>처분조건<br>담당자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br>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

|                             |   |   |                  |          |                                                                                                                                                                                                              |
|-----------------------------|---|---|------------------|----------|--------------------------------------------------------------------------------------------------------------------------------------------------------------------------------------------------------------|
| 전세사기<br>피해자<br>(추가<br>공통서류) | ○ | ○ | 임대차계약서           | 해당<br>주택 | ■ 해당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 |   | 낙찰증빙서류           |          | ■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사본                                                                                                                                                                                |
|                             | ○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                             | ○ |   | 채권자 확인서류         |          | ■ 임대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br>-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br>-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부적격<br>통보를<br>받은 자          |   | ○ | 해당주택에 대한<br>소명자료 | 본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br>■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br>■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대리인<br>(본인 외<br>모두 제3자)     | ○ |   | 위임장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한정, 대리인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사업주체]<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구분               |                                            | 소득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br>※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br>※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등)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
|                  |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 ①, 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①, ② 해당 직장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br>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br>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본)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br>③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br>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 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br>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①, ② 세무서<br>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소득금액증명원<br>③ 전년도 재무제표                                                                                                                                                                                                                          | ① 세무서, 등기소<br>② 세무서<br>③ 해당 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 명세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① 행정복지센터 등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br>※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① 해당 직장<br>② 해당 직장/세무서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에 비치)<br>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① 견본주택 비치<br>② 세무서                  |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4.)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신생아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구분             |                                                                                        |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 자격입증<br>기본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 직장 및 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br>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소득세<br>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br>/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br>한함<br>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br>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br>① 소득금액증명및납부내역증명서와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납부자)<br>(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① 세무서<br>②,③ 해당 직장 및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  
시 되어야 인정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구분                    | 자산입증 제출 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br>소유현황이<br>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r>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br>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br>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
|                       | 추가<br>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br>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br>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br>(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br>'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br>③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외 위택스<br>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br>토지이음 |
| 부동산<br>소유현황이<br>없는 경우 | 필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br>※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br>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br>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여권과 함께 제출<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br>※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람.<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포함 발급)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br>※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발급)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br>※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발급)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br>■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br>■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br>■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출입국 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포함 발급)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발급)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li> <li>■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li> </ul>                                                                                                                                                                                                                                                                                                       |
|                  |   | ○ | 복무 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
| 해외근무자<br>(단신 부임) |   | ○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br>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li> </ul>                                                                                                                                                                                                                                                                                                                                                                                                                              |
|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li> <li>① 비자 발급내역 /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li> </ul>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br>등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li> <li>■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li> </ul>                                                                                                                                                                                                                                                                                                  |
|                  | ○ |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 배우자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li> <li>※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li> </ul>                                                                                                                                                                                                                                                                                                               |
| 가점제<br>당첨자       | ○ |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발급)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전체포함’ 발급</li> </ul>                                                                                                                                                                                                                                                                                                               |
|                  |   | ○ |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포함 발급)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전체포함’ 발급</li> </ul>                                                                                                                                                                                                                                                                                                                  |
|                  |   | ○ | 가족관계증명서<br>(상세 발급)   | 배우자 및<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혼인관계증명서<br>(상세 발급)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공통서류) | ○ | ○ | 임대차계약서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li> </ul>                                                                                                                                                                                                                                                     |
|                    | ○ |   | 낙찰증빙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허가결정(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사본</li> </ul>                                                                                                                                                                                                                                            |
|                    | ○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li> </ul>                                                                                                                                                                                                                                                  |
|                    | ○ |   | 채권자 확인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li> <li>-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 신청서 등의 사본</li> <li>- 공매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li> <li>■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li> </ul>                                                                                     |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 대리인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li> </ul>                                                                                                                                                                                                                                                |

|                     |   |  |             |     |                                                                                                                                                                                                                                                                                                  |
|---------------------|---|--|-------------|-----|--------------------------------------------------------------------------------------------------------------------------------------------------------------------------------------------------------------------------------------------------------------------------------------------------|
| (본인 외<br>모두<br>제3자)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한정, 대리인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제출처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사업주체]</li> <li>※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li> </ul> |
|                     | ○ |  | 신분증 및 도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증면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 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장소                                               | 문의 전화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6.08.24.(월) ~ 2026.08.26.(수)<br>10:00 ~ 16:00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견본주택<br>[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 | 055-635-0101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별도 안내 예정                                         |                                                  |              |

### ■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전북은행 | 1013-01-4439928 | (주)한국토지신탁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p>※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p> <p>※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p> |      |             |                            |      |                                                                                                                                                                   |
|-----------------------------------------------------------------------------------------------------------------------------------------------------------------------------------------------------------------------------------------------------------------------------------------------------------------------------------------------------------------------------------------------------------|------|-------------|----------------------------|------|-------------------------------------------------------------------------------------------------------------------------------------------------------------------|
|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             |                            |      |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             | 신분증<br>(※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br>※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                                                                                                                                                                                                                                                                                                                                                                                                           | ○    |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br>- 수입인지 구입처<br>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br>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br>자격확인 서류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br>요구하는 서류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 ■ 건본주택 비치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건본주택 비치<br>■ 아파트 공급대금 및 유상옵션 합산 금액이 6억원 초과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
| 대리인<br>(본인 외<br>모두 제3자)                                                                                                                                                                                                                                                                                                                                                                                   | ○    |             | 위임장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한정, 대리인발급용 불가)<br>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신분증 및 도장<br>(※ 모바일 신분증 불가)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br>■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br>[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기재금액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총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 사업주체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계약자 부담액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7만5천원          | 17만5천원  |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http://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당첨자<br>계약체결기간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li> <li>·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 <b>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b></li> </ul>                                                                                                                                                                                                                                                                                                                                                                                                                                                                                                                                                                                                                                                                                                                                                                                                                                                                                                                                                                                                                                                                                                                                                                                                                                                                                                                                                                                                                                                                                                                                                                         |
| 입주대상자<br>자격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li> <li>·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 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ol> </li> <li>※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li> <li>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li> <li>2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li> <li>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li> </ol> </li> </ul> |

|                                                   |                                                                                                                                                                                                                                                                                                                                                                                                                                                                                                                                                                                                                                                                                                                                                                                                                                                                                                                                                                                                                                                                                                          |
|---------------------------------------------------|----------------------------------------------------------------------------------------------------------------------------------------------------------------------------------------------------------------------------------------------------------------------------------------------------------------------------------------------------------------------------------------------------------------------------------------------------------------------------------------------------------------------------------------------------------------------------------------------------------------------------------------------------------------------------------------------------------------------------------------------------------------------------------------------------------------------------------------------------------------------------------------------------------------------------------------------------------------------------------------------------------------------------------------------------------------------------------------------------------|
|                                                   | <p>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 또는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p> <p>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 제한 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p> <p>6.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 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된 경우</p> <p>7.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한다)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 된 경우</p> <p>8. 사전 청약으로 모집된 사전 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된 후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p> <p>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당첨 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 된 경우</p> <p>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 된 경우</p>                                                                                                                                                                                                                                                                                                                                                                                                             |
| <p><b>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b></p> | <p>•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p> <p>1.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분간 특별공급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합니다.</p> <p>•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p> <p>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 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p><b>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b></p>                     | <p>•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p> <p>※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p>                                                                                                                                                                                                                                                                                                                                                                                                                                                                                                                                                                                                                                                                                                                                                                |

|           |                                                                                                                                                                                                                                                                                                                                                                                                                                                                                                                                                                                                                                                                                                                                                                                                                                                                                                                                                                                                                                                                                                                                                                                                                                                                                                                                                                                                                                                                                                                                                                                                             |
|-----------|-------------------------------------------------------------------------------------------------------------------------------------------------------------------------------------------------------------------------------------------------------------------------------------------------------------------------------------------------------------------------------------------------------------------------------------------------------------------------------------------------------------------------------------------------------------------------------------------------------------------------------------------------------------------------------------------------------------------------------------------------------------------------------------------------------------------------------------------------------------------------------------------------------------------------------------------------------------------------------------------------------------------------------------------------------------------------------------------------------------------------------------------------------------------------------------------------------------------------------------------------------------------------------------------------------------------------------------------------------------------------------------------------------------------------------------------------------------------------------------------------------------------------------------------------------------------------------------------------------------|
|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p> <p>※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p> <p>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p> <p>•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p> <p>•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
| 기타 계약체결조건 | <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p>                                                                                                                                                                                                                                                                                                                                                                                                                                                                                                                                                                                                                                                                                                                                                                                                                                                                                                                                                                                                                                                                                                                                              |
| 유의사항      | <p>•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p> <p>•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p> <p>•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 중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한하여 계약 체결함)</p> <p>•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 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p> <p>•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 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p>•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 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p>•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p> <p>-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p> |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한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로 알선할 예정이나 이는 “조건부 중도금 무이자혜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9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 계약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약식표기         | 84A | 84B | 99 |
|--------------|-----|-----|----|
|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 무상  | 무상  | 무상 |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시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장 등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 배관 등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확장 부분 외부 창호는 이중 창호로 설치되고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창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기에 접하는 창호(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드레스룸 등) 및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등에는 실내외 온도차 및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

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 등의 전기 마감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1) 현관 중문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A] 현관 수동 중문 |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수동 중문<br>+ 시트 판넬 (중문 좌우 벽체)           | 84A, 84B                   | 200,000 | 1,110,000 | 1,310,000 |
|              |                                                   | 84A, 84B<br>(108,109,110동) | 200,000 | 1,170,000 | 1,370,000 |
|              |                                                   | 99                         | 200,000 | 1,300,000 | 1,500,000 |
|              |                                                   | 99<br>(시그니처키친<br>선택시)      | 100,000 | 750,000   | 850,000   |
| [B] 현관 자동 중문 |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 (리니어 모터형)<br>+ 시트 판넬 (중문 좌우 벽체) | 84A, 84B                   | 300,000 | 1,710,000 | 2,010,000 |
|              |                                                   | 84A, 84B<br>(108,109,110동) | 300,000 | 1,790,000 | 2,090,000 |
|              |                                                   | 99                         | 300,000 | 1,890,000 | 2,190,000 |
|              |                                                   | 99<br>(시그니처키친<br>선택시)      | 200,000 | 1,340,000 | 1,540,000 |

※ 현관 중문의 하부 레일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되며, 바닥 마감재보다 돌출됩니다. 상부 레일은 돌출되어 노출형으로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유리는 강화유리(5T)에는 비산방지필름이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시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미선택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자동 중문 선택시 센서 노출형으로 시공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시 시트판넬 범위가 상이하오니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8,109,110동은 세대 천장고 2.4M로 시공됩니다. (이외 2.3M 기준)

(2) 바닥재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광폭강마루          | 거실/주방/복도/침실/드레스룸 바닥 광폭강마루(165x1200) 업그레이드                           | 84A                | 100,000 | 1,100,000 | 1,200,000 |
|                |                                                                     | 84B                | 100,000 | 1,100,000 | 1,200,000 |
| 스퀘어강마루 + 광폭강마루 | 거실/주방/복도 바닥 SB스퀘어강마루(600x600)<br>+ 침실/드레스룸 바닥 광폭강마루(165x1200) 업그레이드 | 99                 | 200,000 | 1,630,000 | 1,830,000 |
|                |                                                                     | 99<br>(시그니처키친 선택시) | 200,000 | 1,650,000 | 1,850,000 |

※ 옵션 미선택시, 중폭강마루(115x800)가 시공됩니다.

※ 알파룸, 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가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바닥재가 시공됩니다. (현관 창고 제외)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옵션시 99타입에 시공되는 SB스퀘어 강마루는 광폭강마루 소재와 차이가 있으므로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벽 마감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벽 마감 업그레이드 |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br>+ 거실 소파 뒷벽/창호면 및 복도 아트월 벽 시트 판넬 | 84A                   | 300,000 | 2,930,000 | 3,230,000 |
|            |                                                      | 84A<br>(108,109,110동) | 300,000 | 3,090,000 | 3,390,000 |
|            |                                                      | 84B                   | 300,000 | 2,710,000 | 3,010,000 |
|            |                                                      | 84B<br>(108,109,110동) | 300,000 | 2,920,000 | 3,220,000 |
|            |                                                      | 99                    | 400,000 | 3,920,000 | 4,320,000 |

※ 옵션 미선택시, 거실 아트월은 포세린타일(600x1200)로 시공되며, 이외 지정된 실크벽지가 시공됩니다. 타입별 마감재가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및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트 판넬 옵션 선택시, 판넬 마감 범위는 타입 및 선택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세라믹타일은 랜덤 패턴으로 시공되며, 커팅 위치에 따라 밝기 및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8,109,110동은 세대 천장고 2.4M로 시공됩니다. (이외 2.3M 기준)

| (4) 주방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                                                                                                                                                                                                |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            |
|--------------------------------------------------------------------------------------------------------------------------------------------------------------------------------------------------------------------------------------------------------------------------------------------------------------------------------------------------------------------------------------------------------------------------------------|------------------------------------------------------------------------------------------------------------------------------------------------------------------------------------------------|-----------------------|------------------|------------|------------|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시그니처 키친                                                                                                                                                                                                                                                                                                                                                                                                                              | 1. 유럽산 세라믹 벽체 및 상판<br>2. 양면수납 대형 아일랜드 하부장(서랍형) + 장식장<br>+ 상부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br>3. 가구 ACC 업그레이드<br>(수저분리함 확장, 시즈닝바스켓, 매직코너장, 벽부착형ACC)<br>4. 라인조명(작업대 상부)<br>5. 무광 싱크수전 + 절수페달                | 84A                   | 1,300,000        | 11,600,000 | 12,900,000 |
|                                                                                                                                                                                                                                                                                                                                                                                                                                      |                                                                                                                                                                                                | 84A<br>(108,109,110동) | 1,300,000        | 11,790,000 | 13,090,000 |
|                                                                                                                                                                                                                                                                                                                                                                                                                                      |                                                                                                                                                                                                | 84B                   | 1,300,000        | 11,600,000 | 12,900,000 |
|                                                                                                                                                                                                                                                                                                                                                                                                                                      |                                                                                                                                                                                                | 84B<br>(108,109,110동) | 1,300,000        | 11,790,000 | 13,090,000 |
|                                                                                                                                                                                                                                                                                                                                                                                                                                      | 1. 유럽산 세라믹 벽체 및 상판<br>2. 아일랜드 하부장(여닫이+서랍형) + 주방 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선반)<br>+ 장식장 + 상부 플랩장(하프미러도어, 히든 후드, 센서 조명)<br>3. 가구 ACC 업그레이드(수저분리함 확장, 시즈닝바스켓, 벽부착형ACC)<br>4. 라인조명(작업대 상부)<br>5. 무광 싱크수전 + 절수페달 | 99                    | 1,300,000        | 12,040,000 | 13,340,000 |
| ※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세라믹은 랜덤 패턴으로 시공되며, 커팅 위치에 따라 밝기 및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후드 외의 기타 빌트인 가전제품은 별도 추가 선택품목입니다.<br>※ 본공사시 마감재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옵션 선택시 상부장 하부 센서조명은 후드 및 일부구간 제외되며, 84타입은 일부 여닫이장이 포함됩니다.<br>※ 84타입의 경우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시 9-A항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br>※ 108,109,110동은 세대 천장고 2.4M로 시공됩니다. (이외 2.3M 기준) |                                                                                                                                                                                                |                       |                  |            |            |

(5) 키친핏 냉장고 세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A] 키친핏 냉장고 세트<br>(삼성전자) | [A-1] 수납장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여닫이장 : 하부 서랍형, 155도힌지)<br>+ 냉동전용고(1도어) + 냉장전용고(1도어) + 김치전용고(1도어) 세트<br>(일반형, 칼라 : 코타화이트)     | 84A, 84B | 600,000   | 5,210,000  | 5,810,000  |
|                          |                                                                                                                   | 99       | 600,000   | 5,210,000  | 5,810,000  |
|                          | [A-2] 수납장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여닫이장 : 하부 서랍형, 155도힌지)<br>+ 냉동전용고(1도어) + 냉장전용고(1도어) + 김치전용고(1도어) 세트<br>(고급형, 칼라 : 타임리스 그레이지) | 99       | 1,100,000 | 10,180,000 | 11,280,000 |
| [B] 키친핏 냉장고 세트<br>(LG전자) | [B] 수납장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여닫이장 : 하부 서랍형, 155도힌지)<br>+ 냉동전용고(1도어) + 냉장전용고(1도어) + 김치전용고(1도어) 세트<br>(칼라 : 베이지)              | 84A, 84B | 600,000   | 5,590,000  | 6,190,000  |
|                          |                                                                                                                   | 99       | 600,000   | 5,590,000  | 6,190,000  |

※ 키친핏 냉장고는 세미 빌트인 제품으로, 가구와 제품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 냉장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계산방식 변경 등 법률 개정 및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본공사시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센트리C-HOME'에서 연동링크를 통해 제조사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삼성전자 고급형 모델은 99타입만 선택 가능합니다.

※ 키친핏 냉장고는 평면의 대칭여부와 관계 없이 냉동+냉장+김치 순으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좌측 냉동, 중앙 냉장, 우측 김치)

(6) 주방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A] 인덕션 업그레이드 | [A-1] 인덕션 3구(삼성_NZ63B5056AK)     | 전타입  | 100,000 | 850,000 | 950,000   |
|               | [A-2] 인덕션 3구(LG_BEI3ASB4BIE)     | 전타입  | 100,000 | 950,000 | 1,050,000 |
| [B] 빌트인 전기오븐  | [B-1] 빌트인 전기오븐(삼성_NQ36A6555CK)   | 전타입  | 100,000 | 280,000 | 380,000   |
|               | [B-2] 빌트인 전기오븐(LG_MZ385EBT1)     | 전타입  | 100,000 | 270,000 | 370,000   |
| [C] 빌트인 식기세척기 | [C-1]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_DW80F71Y1SEW) | 전타입  | 100,000 | 840,000 | 940,000   |
|               | [C-2] 빌트인 식기세척기(LG_DIE5PT)       | 전타입  | 100,000 | 920,000 | 1,020,000 |
| [E] 주방 스마트 TV | 13인치 주방 스마트 TV(동영애텍_DM-N330)     | 전타입  | 100,000 | 560,000 | 660,000   |

※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센트리C-HOME'에서 연동링크를 통해 제조사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의 경우 본공사 투입 시점에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 유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가전 및 공간은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항 주방 스마트 TV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주방 창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                            |         |           |           |
|-----------------------------------------------------------------------------------------------------------------------------------------------------------------------------------------|---------------------------------------------------------------------------------------------------------------------------------------------------------------------|----------------------------|---------|-----------|-----------|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주방 시스템 창호                                                                                                                                                                               |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150cm)                                                                                                                                              | 84A, 84B                   | 100,000 | 170,000   | 270,000   |
|                                                                                                                                                                                         | 조망형 시스템 창호 (폭 : 200cm)                                                                                                                                              | 99                         | 100,000 | 260,000   | 360,000   |
| ※ 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마감은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주방 시스템 창호 옵션 선택시, 철재난간이 시공되지 않습니다.<br>※ 시스템 창호 선택시, 여닫이 환기창은 모두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                                                                                                                                                                     |                            |         |           |           |
| (8) 시그니처 바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                            |         |           |           |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시그니처 바스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br>2.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br>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아메리칸 스탠다드)<br>4. 무광천장재 + 간접조명(천장)<br>5. 복합 환풍기                                                   | 84A, 84B                   | 700,000 | 6,010,000 | 6,710,000 |
|                                                                                                                                                                                         | 1. 포세린 벽체 타일(600x600) + 샤워부스 내부 포세린 바닥 타일(600x600)<br>2. 수전/액세서리 제품 업그레이드(무광)<br>3. 도기 제품 업그레이드(아메리칸 스탠다드)<br>4. 무광천장재 + 간접조명(천장)<br>5. 복합 환풍기<br>6. 욕실2 세라믹 세면대 상판 | 99                         | 800,000 | 7,010,000 | 7,810,000 |
| ※ 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마감은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옵션 미선택시, 욕조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수납형 에이프런으로 시공됩니다.<br>※ 시그니처 바스 옵션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br>※ 시그니처 바스 선택시, 스위치의 위치와 회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9) 수납 추가 옵션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                            |         |           |           |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A] 시스템 선반 추가                                                                                                                                                                           | 주방 팬트리 시스템선반                                                                                                                                                        | 84A, 84B                   | 100,000 | 340,000   | 440,000   |
|                                                                                                                                                                                         |                                                                                                                                                                     | 84A, 84B<br>(108,109,110동) | 100,000 | 390,000   | 490,000   |
| [B] 침실3 불박이장 추가                                                                                                                                                                         | 여닫이장 (침실 폭 2.7m)                                                                                                                                                    | 84A, 84B                   | 100,000 | 1,050,000 | 1,150,000 |
|                                                                                                                                                                                         |                                                                                                                                                                     | 84A, 84B<br>(108,109,110동) | 100,000 | 1,160,000 | 1,260,000 |
|                                                                                                                                                                                         | 여닫이장 (침실 폭 3.0m)                                                                                                                                                    | 99                         | 100,000 | 1,290,000 | 1,390,000 |
| ※ 9-A항 주방 팬트리 시스템선반은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                            |         |           |           |

※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구가 설치되는 바닥, 벽체,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108,109,110등은 세대 천장고 2.4M로 시공됩니다. (이외 2.3M 기준)

(10) 시그니처 스타일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시그니처 스타일룸 | 1. 파우더 특화 (화장대 + 측면 벽체 + 파우더 상부 조명)<br>2. 드레스룸 특화 (드레스룸 은경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 84A, 84B                   | 400,000 | 4,330,000 | 4,730,000 |
|           |                                                                                                          | 84A, 84B<br>(108,109,110등) | 400,000 | 4,490,000 | 4,890,000 |
|           | 1. 파우더 특화 (화장대 + 파우더 상부 조명 + 조명형 장식장)<br>2. 드레스룸 특화 (드레스룸 은경도어 +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 99                         | 600,000 | 6,110,000 | 6,710,000 |

※ 옵션 미선택시 파우더 공간만 제공되며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선반은 폴대형으로 설치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타입의 경우 옵션 선택시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컬러가 변경됩니다.

※ 108,109,110등은 세대 천장고 2.4M로 시공됩니다. (이외 2.3M 기준)

(11)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및 선택형 |                 | 공급대금      |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조명 디자인<br>업그레이드 | 거실/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br>+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br>+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br>+ 침실 직간접 직부등/커튼박스 간접조명<br>+ 현관 천장 조명 변경<br>+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br>+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 84A        | 기본              | 800,000   | 8,030,000 | 8,830,000  |
|                 |                                                                                                                                               |            | [4] 시그니처키친 선택세대 | 900,000   | 8,120,000 | 9,020,000  |
|                 |                                                                                                                                               | 84B        | 기본              | 800,000   | 8,000,000 | 8,800,000  |
|                 |                                                                                                                                               |            | [4] 시그니처키친 선택세대 | 900,000   | 8,100,000 | 9,000,000  |
|                 |                                                                                                                                               | 99         | 기본              | 1,000,000 | 9,170,000 | 10,170,000 |
|                 |                                                                                                                                               |            | [4] 시그니처키친 선택세대 | 1,000,000 | 9,370,000 | 10,370,000 |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네트워크 스위치가 고급형으로 변경되며, 네트워크 스위치의 회로수, 크기, 재질, UI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코너 부위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SMPS함(안정기)이 신발장 최상단에 설치되며, 해당 부분의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 평형 타입 및 평면 선택형에 따라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시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거실/복도 아트월 간접조명은 등박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1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3대 (거실, 주방, 침실1)                                     | 84A, 84B | 500,000   | 4,610,000  | 5,110,000  |
|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 800,000   | 7,650,000  | 8,450,000  |
|                                                                                                                                                                                                                                            | 3대 (거실, 주방, 침실1)<br>*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                |          | 500,000   | 4,620,000  | 5,120,000  |
|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br>*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      |          | 800,000   | 7,660,000  | 8,460,000  |
|                                                                                                                                                                                                                                            | 3대 (거실, 주방, 침실1)                                     | 99       | 500,000   | 5,180,000  | 5,680,000  |
|                                                                                                                                                                                                                                            | 3대 (거실, 주방, 침실1)<br>*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                |          | 500,000   | 5,180,000  | 5,680,000  |
|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 800,000   | 8,030,000  | 8,830,000  |
|                                                                                                                                                                                                                                            |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br>*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      |          | 800,000   | 8,040,000  | 8,840,000  |
|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          | 1,000,000 | 9,200,000  | 10,200,000 |
|                                                                                                                                                                                                                                            |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br>*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 |          | 1,000,000 | 9,210,000  | 10,210,000 |
|                                                                                                                                                                                                                                            | 7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알파룸)                 |          | 1,200,000 | 10,970,000 | 12,170,000 |
|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의 일반형으로 설치되어 난방, 공기청정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미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옵션 공급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           |            |            |
| ※ 시그니처 키친 옵션 선택 시에 주방 면적변경에 따라 주방에 설치되는 실내기 용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          |           |            |            |
|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공되는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냉방 부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는 구간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실내기의 크기와 수에 맞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치됩니다.                                                                                                                                                                              |                                                      |          |           |            |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배관이 일부 벽체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3) 제습 환기시스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설치 위치 및 내용                     | 약식표기         | 공급대금    |           |           |
|----------|--------------------------------|--------------|---------|-----------|-----------|
|          |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 제습 환기시스템 | 제습 환기시스템<br>[BESPOKE AI 에어 콤보] | 84A, 84B, 99 | 200,000 | 1,980,000 | 2,180,000 |

※ 제습 환기시스템은 삼성전자 BESPOKE AI 에어 콤보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제조사를 개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은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와 연동운전을 위하여 실외기와 연결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전열교환기 장비는 설치되지 않으며(장비 업그레이드), 상기 옵션 금액은 기본 장비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는 기본 전열교환기와 성능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되며, 장비 변경으로 인해 설치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소음 및 진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인접 공간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제품은 규격 변경이나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시 전용 유선리모컨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은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의 기능을 일부 사용하므로 시스템에어컨 실내기가 전체 가동 시, 제습 환기시스템의 제습 기능은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습 환기시스템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배관이 일부 벽체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장비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C-HOME'에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IoT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부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잔금) | 농협은행 | 301-0388-2118-01 | 동부건설(주) |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마감재 및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옵션 선택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종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가전 선택 시공시 기본 가전제품비용 차감 부과 비용으로 차후 추가 기본사항에 대한 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조명,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설치 유무 및 위치, 회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류,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 및 가구장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공통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최적화설계(V.E)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조경석쌓기 및 방음벽 등의 종류, 색상, 디자인,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인접 건물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기존 전신주 및 맨홀 설치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레벨,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계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조경석쌓기, 경계석, 계단, 마운딩(구릉)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 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84A 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 계획 및 외관, 조경, 조망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실 시공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동(108, 109, 110동)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및 답답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의 규모, 재질 및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할 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입주인 전용 셔틀버스 2대를 기증 및 2년간 운영하며, 운영시점 및 2년경과 후 운영 지속 여부는 입주자 대표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 됩니다.  
(셔틀버스의 운영노선은 향후 입주자 대표협의회 협의를 통해 일부노선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건립지역 인근에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현장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치 사항 안내
  - "현재 기준 거제고현초등학교 배치 예정이나, 향후 교육여건, 통학환경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 전 관할 교육지원청과 최종 협의가 필요함"
  -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 변경(취소, 세대수 변경, 입주시기 조정), 인근 개발사업 추이, 교육청 학생배치 기준(학급별 학생수 상·하향 조정 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인 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여건

### □ 공통사항

- 단지 인근에 변전소 및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수영장 등) 및 일부세대에서는 해당 시설이 육안으로 조망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산지나 인근 대지에 설치된 송전탑 및 고압선으로 인해 단지 외관 및 조망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진입로 주변 도로 및 단지 북측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고압 송전선로가 지중화되어 매설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환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시설 이전 요구나 소음, 전자파 등을 이유로 하는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는 불가합니다.
- 본 단지 북측에 접한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시설로, 조성 주체 및 지자체 협의에 따라 시설물 계획 및 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원과 인접한 101동 세대는 공원 이용객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원 내 수목 성장에 따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북측에 접한 완충녹지는 현재 사업주체의 임의 계획안(산책로 포함)으로, 향후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구간, 시설물 사양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야 하므로 홍보물 상의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후 완충녹지의 유지관리 및 개방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 단지 북측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음 및 경광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 건물, 진입로, 조화적치 장소 등이 육안으로 조망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병원 부대시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동측(104동 인접)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유수지(저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유수지 내 고인 물로 인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영구음영 포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공간 명칭, 단지 주부출입구, 주동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시에는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 및 주차장 상부 보행데크(1층 외부공간)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 주변에는 콘크리트 옹벽, 석축, 조경석쌓기, 생울타리, 헨스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옹벽은 대지 레벨 및 토목 공사 여건에 따라 3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 및 미관 저해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가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 구간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인해 차량 주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호 유리난간 설치에 따른 특성상 이삿짐과 가구, 가전, 악기 등 대형물품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 BI,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시 검토로 인하여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및 CCTV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또는 입주자가 점용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의 대체구거, 옹벽 등 도시기반시설 및 차량진입부 차로보도 중 영구점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점용료 등 점용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 주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결정 및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앞서 향후 점용비용 및 유지관리비 부담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차량 진출입부 가감차로 및 보도 등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하여 부지 내에 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구간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상권 설정 위치, 범위, 기간 및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확정되며, 향후 등기부등본 및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앞서 부지 내 지상권 설정 사실 및 이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와 현관문이 서로 마주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평면 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 부서공간 및 에어매트 설치공간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동주변으로 우수 도파관이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세대 벽체와 승강로가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승강기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입주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산지에 묘지가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묘지가 보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배치

-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캐노피, 입면 장식, 옥상 구조물,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피해 및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부 출입 통로동선 및 보행로 등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며, 이를 단지모형 및 CG 등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인접부에 D/A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동측, 106동 남동측에는 전기, 발전기실 DA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매연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웰컴라운지 승강기 및 홀, 난간으로 인하여 101동 105호 세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승강기로 인하여 106동 105호, 107동 105호 세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으로 인하여 107동 101호, 102호, 202호, 203호 세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계약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상부 조정시설물로 인해 102동 4호라인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 제한,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계약 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인입을 위해 단지 내 전기시설물(전주 또는 패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단지 내 11개소로 아파트용 10개소(101동 남측 1개소, 102동 북측 1개소, 103동 북측 1개소, 104동 북측 1개소, 105동 남측 1개소, 106동 북측 1개소, 107동 남측 1개소, 108동 동측 1개소, 109동 북측 1개소, 110동 북측 1개소), 근린생활시설 전용 1개소(근린생활시설 남측 1개소)가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램프(장애인 겸용)의 위치, 형태, 크기, 길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은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는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오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당 사업지 대지경계 밖에 조성된 차도 및 보행로는 당 사업지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상도로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의 정책 및 인허가 진행 시 인접 주변도로 건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건립 시에는 도로의 레벨, 폭, 방향 등이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 사업지와 연관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옥외 승강기 5대 (부출입구, 105동, 107동, 108동 인근 승강기), 커뮤니티 승강기 6대 (웰컴라운지,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센트럴커뮤니티 승강기)는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슬라브중 Precast Concrete구간은 별도의 천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부위는 무기질계 뿔철 마감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내부 구조벽체를 제외한 비내력벽체는 경량철골벽(Dry wall) 구조로 되어있으며, 못, 앵커등의 고정이 불가하고 피스등을 사용한 고정필요시 스티드파인더를 구매하시어 스티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안내책자에 배포되는 거실의 벽걸이 TV 보강위치와 고정으로 인한 하자 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1동, 센트럴커뮤니티(피트니스,키즈플레이그라운드) 외벽면 에는 벽천 또는 벽전형 시설이 설치되며, 인접 세대에서는 이에 따른 소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남동측에는 펫스쿨(반려동물 특화 정원) 및 캠핑장이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주변에 놀이,운동,휴게 공간 및 옥외계단 등이 위치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스터 스카이 360(아스터 스카이라운지, 104동 29층) 설치로 인접 혹은 하부 세대에서는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럴가든스위트(게스트하우스, 105동) 설치로 인접 혹은 상부 세대에서는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스터 스카이 360(아스터 스카이라운지, 104동 29층) 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며, 이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동

-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견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단차로 인해 각동별 출입구의 진입방법(필로티, 무단차, 경사로, 계단 등)은 상이하며 계약전 모형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지상1층에 설치되고, 무인택배함은 지하2층 각동별로 1개소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홀,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위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피뢰설비, TV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눈부심, 풍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전실구간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단위세대 현관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통기관, 환기설비 등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기능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뿔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집광판으로 인한 빛의 산란(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사생활의 침해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하향식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세대가 없는 최하층 세대(1층 및 필로티) 하부에는 층간완충재 설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민 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주민카페, 게스트 하우스 등),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등이며 내·외부 시설물의 내용 및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주민카페, 게스트 하우스,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율데이다이닝,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나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장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안전요원배치, 인건비, 용수, 소독비, 전기료 등)은 이용료 또는 관리비로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6동 지하3층에 피트니스/골프라운지/GX룸/사우나, 지하2층에 키즈플레이그라운드/가든라운지/율데이다이닝/작은도서관(라이브러리랩),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관리사무소,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웰컴라운지, 102,103동 동측 지하1층에 수영장, 103동 1층에 경로당, 104동 29층에 스카이라운지, 105동 지하3층에 게스트하우스, 107동 남서측 108동 남동측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인접세대(수직, 수평)에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 에 의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품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실 배치, 구성, 건축 이용계획, 명칭,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관리사무소, 웰컴라운지, 근린생활시설, 103동 경로당, 104동 29층 스카이라운지는 옥외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101동 다함께돌봄센터, 103동 경로당, 105동 게스트하우스, 106동 주민공동시설, 108동 남동측 어린이집 ]는 실외기실로 각각 구획되어있으며,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위치 및 개소는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레 티하우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며, 나머지 옥외 파고라(조경시설물)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교보문고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준공 시 교보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도서 3,000권이 최초 제공되며, 이후 2년간 약 1,500권의 도서(예정)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2년 경과 후 서비스는 종료되며, 서비스 연장 여부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단, 본 서비스는 제휴업체(교보문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수정·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계약자가 임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비용 환불 및 대체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조경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식재, 포장, 데크, 석가산,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휴게시설, 펫파크, 캠핑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미술장식품 등)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비상차로 및 보행로, 소방차 부서공간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조경,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펫파크, 캠핑장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 모형에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는 캠핑장 분위기 표현하기 위한 예시이며, 시공사가 직접 설치,제공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 101,102,103,106,108,109,110,동 주변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물놀이터나 바닥분수, 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수비, 전기료, 소독비, 안전요원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물놀이터나 바닥분수, 수경시설 가동시 기계설비(펌프 등)에 따른 소음 및 이용자들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물놀이터나 바닥분수, 수경시설 가동시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소음, 야간 조망, 사생활침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인증을 득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물놀이터나 바닥분수는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 및 문제 해결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외부구간 자전거보관소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는 동에는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출입구 인근 및 단지내 비상차로 구간에 소방차 부서공간이 구획되며, 단지 특화를 위해 일부 구간이 친환경 포장재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조경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종 법규나 지침에 의한 변경, 설계 구체화에 따른 변경으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경시설 관련 보여지는 이미지는 수경시설 연출,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 본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총 1,792대(아파트 1,765대, 근린생활시설 27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에 따라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광폭주차구획 폭 2.6m이상 80%이상, 2.7m이상 10%이상 설치는 경차를 제외하고 확장형주차, 장애인주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여 집계한 것으로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통행로 유효 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21년 5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받은 현장이나 현재 주차장법 기준에 따라 일반형 2.5X5m 확장형 2.6X5.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화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기둥,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장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뽁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랜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현황상 경사로 인해 2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으며 A블록은 101, 102, 103, 104동과 연결되어 있고 B블록은 105, 106, 107, 108, 109, 110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별 주차대수는 가능한 사용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나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블록은 내부의 원형램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의 단지내 도로를 통해서도 서로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 대지 현황상 A블록은 지하 2층 2곳에서 진입이 가능하며 B블록은 지하2층과 지하1층 각각 1곳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는 벽면이 지상에 노출되어 인접세대에 불빛, 소음, 매연의 피해를 줄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에 전기차 급속, 완속 충전설비가 설치되고, 수량과 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용요금 및 유지관리 관련 입주자 협의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급속충전기 3대, 완속충전기 88대(과급형충전콘센트포함)가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와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2채널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는 열화상 지능형 CCTV가 설치되며, CCTV의 위치와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용 차단기의 위치와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부출입구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는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로 연결되는 중로3-19호선 접속도로는 사업주체 외 거제시가 개설하는 구간이 일부 존재하며,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거제시 계획에 따라 입주시점에 개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1개소(근린생활시설 남측 1개소) 설치계획 예정입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공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은 근린생활시설 남동측에 실외기실외기 웰컴라운지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01, 102동 인근 지상1,2,3층에 위치하며 전면 보행로 레벨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내부와 외부 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는 간판으로 인해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27대)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공사 주차구획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면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시설간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바닥 슬래브는 주변 대지 레벨을 따라 계단식으로 형성될 예정이며, 시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상세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3층은 사업주체와 ㈜교육다움 간의 계약에 따라 '종로엠텔' 및 '일루와어학원(또는 동등 수준의 교육 브랜드)의 프리미엄 교육·돌봄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당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별도의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되므로, 계약자(입주민)는 향후 교육 서비스의 제공 형태 및 세부 운영 방식(계약업체, 브랜드명, 입점시기 등 변경가능)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기타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보행로, 회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악취,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지하수 관정은 수영장 및 물놀이터, 조경 용수 등 공용 용수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전기료, 검사비 등) 및 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향후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비상수도로 대체될 수 있고, 이 경우 용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 □ 공통사항

- 단위세대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후드, 전기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는 Mock-up 세대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체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가구재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 상 안목치수와 실측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침실,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부 및 단위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실외기실, 다용도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매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 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중문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선택시)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시공부분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기준층 층고는 2.8M(108, 109, 110동은 2.9M), 천장고는 2.3M(108, 109, 110동은 2.4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욕실 내 천장 높이는 전세대 동일)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조대리석류(주방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현관디딤판 등) 및 세라믹타일류(주방상판 등)는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 공사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입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108, 109, 110동은 천장과 2.4m로 창호나 가구 상단으로 필요한 치수만큼 벽체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원하시는 가전 제품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위스타워 등)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하자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품목은 공간을 반드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쿡탑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과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크기나 마감자재, 레이아웃 및 제품품목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내부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수납장),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TV(유상옵선), 약세서리, 빌트인 제품(쿡탑, 후드 등) 등은 평형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시 제품 사양 및 제조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9타입 욕실2(부부욕실) 세면대 하부 선반은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판으로 분절되어 시공되며 고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티프팅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색상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과 마루굽돌은 제품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눈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창 중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 부분만 개폐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창고 및 팬트리(옵선시)에 설치되는 선반은 개구부 확보를 위해 가구문틀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현관 창고 도어는 신발 높이와 상관이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및 장식장(옵선시) 여닫이장 도어의 손잡이는 반매립형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냉장고장 상부 플랩장은 냉장고 설치시 틈새가 좁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상부 각종 배관 가림막은 미관상 설치되며, 상부 틈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99타입 시그니처바스 옵션 선택시 욕실2 세면대 상판은 세라믹타일로 시공되며, 상판 디테일은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시공되며, 관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4동, 108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2동 헬룸, 105동 동통신실

#### □ 발코니/실외기실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견본주택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에 따라 상·하층 세대 간 단열성능 및 형태 등의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고 상·하층 실사용 면적 차이 및 사용공간 차이 등으로 인해 거주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선택에 따른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유리제원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설비는 그릴을 통해 유입되는 우수 및 시스템에어컨 응축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문은 철재방화문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 재료, 성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그릴창으로 설치되며, 크기, 형태, 위치, 색상 및 디자인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단위세대 평면 및 해당법령에 따라 소방배관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로 인해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 시공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시스템 가동시 운전소음이 단위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홀수층과 짝수층이 서로 교차되게 설치되며(최하층 세대는 설치하지 않음), 상하층간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선흡통 및 드레인 위치는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 천장 높이는 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실외기실 바닥레벨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내부에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제외되며, 그 중 필로티 상부세대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구조계산 및 안정성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착색프레임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와 문 및 기타 창호부속자재의 사양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개수, 디자인, 형태, 규격,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난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피난기구의 종류 및 수량은 관련 법에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발코니 분합문은 단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중창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주방창은 시스템창호 유상옵션이 설치 되어있으며, 유상옵션 미 선택 시 철재 난간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에 면하는 PL창호 및 실외기 그릴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거실 창호와 안방발코니 외창에는 조망을 고려한 유리난간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 난간 외측 유리의 경우 구조상 입주자가 직접 청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유리면의 오염, 스크래치, 물 때 등은 기상조건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유리 교체나 정기적인 외부 청소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유리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능, 품질기준으로 시공되나, 사용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철재난간으로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 □ 기계/전기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및 액세서리류는 세제 등 생활용품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저,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조명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환기용 디퓨저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재질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및 침실1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미시공)단,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제조사별 판매가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는 일부 호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욕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커버는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 주방 액세서리(웍션사) 위치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에 따라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의 싱크대의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에 따라 일부 타입에 한해 발코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가전 설치품목은 공간을 사전에 실측 확인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자대상이 아닙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 (워시타워) 설치시 창호 개폐에 간섭될 수 있으며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시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 위생도기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욕실 세대내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배기가 직배기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 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 시스템은 가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측정의 방법은 관련법에 준수하여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철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전세대 거실과, 최저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각 실(주방 창고 등 작은창 제외)에는 방법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복도 등 공용부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와 상부층(상층 세대) 설비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은 전제 주동 옥상에 설치되며, 동별 수량 및 용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의 전체 용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유상옵션)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TV와 배관배선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센트레빌 전용앱) 홍보 내 표현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및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화선 사용료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어서비스는 바이비와 호환되는 홈IoT 전용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어서비스는 연동링크를 통해 홈IoT 전용 가전기기 제조사의 홈IoT 앱에 연결되어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신사 무관)
- 센트리 C-HOME 내 커뮤니티 예약 서비스는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옵션)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류 월패드, 주방TV 등은 본 공사시 색상, 재질, UI, 크기, 세부기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의 상부층 단위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옥상은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 건물 입면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                                                                                                                                                                                                                                                                                                                                                                                                                                                                                                                                                                                                                                                                                                                                                                                                                                                                                                                                                                                                                                                                                                                                                                                                                                                                                                                                                                                                                                                                                                                                                                                                                                                                                                                                                                                                                                                                                                                                                                                                                                                                                                                                                                                                                                                                                                                                                                                                                                                                                                                                                                                                                                                                                                                                                                                                                                                                                                                                                                                                                                                                                                                                                                                                                                                                                                                                                                                                                                                                                                                                                                                                                                                                                                                                                                                                |
|------------------------------------------------------------------------------------------------------------------------------------------------------------------------------------------------------------------------------------------------------------------------------------------------------------------------------------------------------------------------------------------------------------------------------------------------------------------------------------------------------------------------------------------------------------------------------------------------------------------------------------------------------------------------------------------------------------------------------------------------------------------------------------------------------------------------------------------------------------------------------------------------------------------------------------------------------------------------------------------------------------------------------------------------------------------------------------------------------------------------------------------------------------------------------------------------------------------------------------------------------------------------------------------------------------------------------------------------------------------------------------------------------------------------------------------------------------------------------------------------------------------------------------------------------------------------------------------------------------------------------------------------------------------------------------------------------------------------------------------------------------------------------------------------------------------------------------------------------------------------------------------------------------------------------------------------------------------------------------------------------------------------------------------------------------------------------------------------------------------------------------------------------------------------------------------------------------------------------------------------------------------------------------------------------------------------------------------------------------------------------------------------------------------------------------------------------------------------------------------------------------------------------------------------------------------------------------------------------------------------------------------------------------------------------------------------------------------------------------------------------------------------------------------------------------------------------------------------------------------------------------------------------------------------------------------------------------------------------------------------------------------------------------------------------------------------------------------------------------------------------------------------------------------------------------------------------------------------------------------------------------------------------------------------------------------------------------------------------------------------------------------------------------------------------------------------------------------------------------------------------------------------------------------------------------------------------------------------------------------------------------------------------------------------------------------------------------------------------------------------------------------------------------------------|
| <p>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li>BI 및 루버는 시공시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일부 BI는 조명형으로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li> <li>주동 입면에 옥실 및 주방배기, 전열교환기 급배기를 위한 환기캡이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며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마감은 저층부 일부구간 및 필로티 내부가 도장 및 석재 뿔칠로 시공되오니, 계약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 창호 (크기, 모양, 색, 사양 등), 난간 (크기, 모양, 색, 재질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 재질, 사양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등의 위치, 형태, 크기, 자재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색채, 저층부 석재, 옥탑구조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모형 및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li> <li>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 사인물 · 위성안테나 · 피뢰침, 기간사업자 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p>■ <b>단지 외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주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거나,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인근 고층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빛공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아파트입주시 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기 학교 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도시개발사업 미준공 등 한국토지신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지권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축물 이용 및 대지사용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li> <li>104동 남동측 유수지 인근 사업지 외부에 위치한 철탑은 한국전력에서 지중화를 진행할 예정이나, 한국전력 및 거제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입주 시점까지 철탑이 존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사업부지 외부 104동 남동측 유수지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형태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환경권 저해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공동주택 부지 외 철탑(북측 완충녹지 내 임시선로 가설철탑 2기, 변전소 내 임시선로 가설철탑 2기, 변전소 내 S/T 철탑 및 CH 철탑, 사업지 남측 유수지 인접 아주 T/L 철탑 2기)은 입주전 철거 예정입니다. 입주시점에 사업 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준공 지연 또는 한국전력 지중화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철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추후 이를 사유로 어떠한 이의 제기,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li> <li>108동 일부 세대의 경우 층 및 향에 따라 주방 창문 등을 통해 국도우회도로 너머 철탑과 인근에 위치한 분묘가 조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현장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b>건본주택 / 홍보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li> <li>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등),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li> </ul> |
|------------------------------------------------------------------------------------------------------------------------------------------------------------------------------------------------------------------------------------------------------------------------------------------------------------------------------------------------------------------------------------------------------------------------------------------------------------------------------------------------------------------------------------------------------------------------------------------------------------------------------------------------------------------------------------------------------------------------------------------------------------------------------------------------------------------------------------------------------------------------------------------------------------------------------------------------------------------------------------------------------------------------------------------------------------------------------------------------------------------------------------------------------------------------------------------------------------------------------------------------------------------------------------------------------------------------------------------------------------------------------------------------------------------------------------------------------------------------------------------------------------------------------------------------------------------------------------------------------------------------------------------------------------------------------------------------------------------------------------------------------------------------------------------------------------------------------------------------------------------------------------------------------------------------------------------------------------------------------------------------------------------------------------------------------------------------------------------------------------------------------------------------------------------------------------------------------------------------------------------------------------------------------------------------------------------------------------------------------------------------------------------------------------------------------------------------------------------------------------------------------------------------------------------------------------------------------------------------------------------------------------------------------------------------------------------------------------------------------------------------------------------------------------------------------------------------------------------------------------------------------------------------------------------------------------------------------------------------------------------------------------------------------------------------------------------------------------------------------------------------------------------------------------------------------------------------------------------------------------------------------------------------------------------------------------------------------------------------------------------------------------------------------------------------------------------------------------------------------------------------------------------------------------------------------------------------------------------------------------------------------------------------------------------------------------------------------------------------------------------------------------------------------------------------|

-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등에 제시된 내·외부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단종),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주방TV(옵션사), 월패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통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배관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실외기실 문 및 그릴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및 개폐방향은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시공시 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 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도로, 옹벽 등)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카달로그, 모형 및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당 견본주택 전시 세대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 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모형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문 및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문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위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가구 및 연출 소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견본주택건립 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추후 제공)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견본세대 및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평면도, 모형 등은 수분양 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예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각종 법규나 지침에 의한 변경, 설계 구체화에 따른 변경으로 인해 본 공사 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관 내에 비치된 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마감재 및 설비계획 등)와 고지, 게시물을 수분양 예정자가 직접 확인한 것을 전제로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전 해당 내용을 충분히 열람·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세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Mock-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                                                                                                                                                                                                                                                                                                                                                                                                                                                                                                                                                                                                                                                                                                                                                                                                                                                                                                                                                                                                                                                                                                                                                                                                                                                                                                                                                                                                                                                                                                                                                                                                                                                                                                                                                                                                                                                                                                                                                                                                                                                                                                                                                                                                                                                                                                                                                                                                                                                                                                                                                                                                                                                                                                                                                                                                                                                                                                                                                                                                                                                                                                                                                  |            |
|--------------------------------------------------------------------------------------------------------------------------------------------------------------------------------------------------------------------------------------------------------------------------------------------------------------------------------------------------------------------------------------------------------------------------------------------------------------------------------------------------------------------------------------------------------------------------------------------------------------------------------------------------------------------------------------------------------------------------------------------------------------------------------------------------------------------------------------------------------------------------------------------------------------------------------------------------------------------------------------------------------------------------------------------------------------------------------------------------------------------------------------------------------------------------------------------------------------------------------------------------------------------------------------------------------------------------------------------------------------------------------------------------------------------------------------------------------------------------------------------------------------------------------------------------------------------------------------------------------------------------------------------------------------------------------------------------------------------------------------------------------------------------------------------------------------------------------------------------------------------------------------------------------------------------------------------------------------------------------------------------------------------------------------------------------------------------------------------------------------------------------------------------------------------------------------------------------------------------------------------------------------------------------------------------------------------------------------------------------------------------------------------------------------------------------------------------------------------------------------------------------------------------------------------------------------------------------------------------------------------------------------------------------------------------------------------------------------------------------------------------------------------------------------------------------------------------------------------------------------------------------------------------------------------------------------------------------------------------------------------------------------------------------------------------------------------------------------------------------------------------------------------------|------------|
| <p>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중 또는 실행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보증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현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청약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동호수가 추첨 배정됩니다.</li> <li>•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li> <li>-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li> <li>•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시행자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건 공급대상 개별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기재된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된 이론적 성능 예측치입니다. 실제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은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확인되며, 설계단계 예측치와 실측값은 시공 과정의 여러 기술적·환경적 변수(완충재 상태, 마감재 시공 정밀도 등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각 49dB 이하) 충족을 목표로 시공하며, 실측 검사결과가 관련규정 기준치 미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li> </ul> |            |
| <p>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p> <p>※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등급, I~Ⅷ)으로 표기</p>                                                                                                                                                                                                                                                                                                                                                                                                                                                                                                                                                                                                                                                                                                                                                                                                                                                                                                                                                                                                                                                                                                                                                                                                                                                                                                                                                                                                                                                                                                                                                                                                                                                                                                                                                                                                                                                                                                                                                                                                                                                                                                                                                                                                                                                                                                                                                                                                                                                                                                                                                                                                                                                                                                                                                                                                                                                                                                                                 |            |
| 구분                                                                                                                                                                                                                                                                                                                                                                                                                                                                                                                                                                                                                                                                                                                                                                                                                                                                                                                                                                                                                                                                                                                                                                                                                                                                                                                                                                                                                                                                                                                                                                                                                                                                                                                                                                                                                                                                                                                                                                                                                                                                                                                                                                                                                                                                                                                                                                                                                                                                                                                                                                                                                                                                                                                                                                                                                                                                                                                                                                                                                                                                                                                                               | 등급         |
| 내진설계범주(D), 동적해석법                                                                                                                                                                                                                                                                                                                                                                                                                                                                                                                                                                                                                                                                                                                                                                                                                                                                                                                                                                                                                                                                                                                                                                                                                                                                                                                                                                                                                                                                                                                                                                                                                                                                                                                                                                                                                                                                                                                                                                                                                                                                                                                                                                                                                                                                                                                                                                                                                                                                                                                                                                                                                                                                                                                                                                                                                                                                                                                                                                                                                                                                                                                                 | VII-0.239g |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2층 2.7m, 지하1층 2.7m(택배차량 진입가능)</li> <li>•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 유효 높이 : 단지 북측, 남측 차량출입구 2.7m(택배차량 진입가능)</li> </ul>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의무사항                       |                                      | 적용 여부 | 내용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 제2항 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거실 및 각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
|-----------------|--------------|---------------------|----------------------|

공공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건물주명

2. 인증일자

3. 인증번호

4. 인증기관

5. 인증대상

6. 인증대상

7. 인증대상

8. 인증대상

9. 인증대상

10. 인증대상

11. 인증대상

12. 인증대상

13. 인증대상

14. 인증대상

15. 인증대상

16. 인증대상

17. 인증대상

18. 인증대상

19. 인증대상

20. 인증대상

21. 인증대상

22. 인증대상

23. 인증대상

24. 인증대상

25. 인증대상

26. 인증대상

27. 인증대상

28. 인증대상

29. 인증대상

30. 인증대상

31. 인증대상

32. 인증대상

33. 인증대상

34. 인증대상

35. 인증대상

36. 인증대상

37. 인증대상

38. 인증대상

39. 인증대상

40. 인증대상

41. 인증대상

42. 인증대상

43. 인증대상

44. 인증대상

45. 인증대상

46. 인증대상

47. 인증대상

48. 인증대상

49. 인증대상

50. 인증대상

51. 인증대상

52. 인증대상

53. 인증대상

54. 인증대상

55. 인증대상

56. 인증대상

57. 인증대상

58. 인증대상

59. 인증대상

60. 인증대상

61. 인증대상

62. 인증대상

63. 인증대상

64. 인증대상

65. 인증대상

66. 인증대상

67. 인증대상

68. 인증대상

69. 인증대상

70. 인증대상

71. 인증대상

72. 인증대상

73. 인증대상

74. 인증대상

75. 인증대상

76. 인증대상

77. 인증대상

78. 인증대상

79. 인증대상

80. 인증대상

81. 인증대상

82. 인증대상

83. 인증대상

84. 인증대상

85. 인증대상

86. 인증대상

87. 인증대상

88. 인증대상

89. 인증대상

90. 인증대상

91. 인증대상

92. 인증대상

93. 인증대상

94. 인증대상

95. 인증대상

96. 인증대상

97. 인증대상

98. 인증대상

99. 인증대상

100. 인증대상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 인증대상

2. 인증대상

3. 인증대상

4. 인증대상

5. 인증대상

6. 인증대상

7. 인증대상

8. 인증대상

9. 인증대상

10. 인증대상

11. 인증대상

12. 인증대상

13. 인증대상

14. 인증대상

15. 인증대상

16. 인증대상

17. 인증대상

18. 인증대상

19. 인증대상

20. 인증대상

21. 인증대상

22. 인증대상

23. 인증대상

24. 인증대상

25. 인증대상

26. 인증대상

27. 인증대상

28. 인증대상

29. 인증대상

30. 인증대상

31. 인증대상

32. 인증대상

33. 인증대상

34. 인증대상

35. 인증대상

36. 인증대상

37. 인증대상

38. 인증대상

39. 인증대상

40. 인증대상

41. 인증대상

42. 인증대상

43. 인증대상

44. 인증대상

45. 인증대상

46. 인증대상

47. 인증대상

48. 인증대상

49. 인증대상

50. 인증대상

51. 인증대상

52. 인증대상

53. 인증대상

54. 인증대상

55. 인증대상

56. 인증대상

57. 인증대상

58. 인증대상

59. 인증대상

60. 인증대상

61. 인증대상

62. 인증대상

63. 인증대상

64. 인증대상

65. 인증대상

66. 인증대상

67. 인증대상

68. 인증대상

69. 인증대상

70. 인증대상

71. 인증대상

72. 인증대상

73. 인증대상

74. 인증대상

75. 인증대상

76. 인증대상

77. 인증대상

78. 인증대상

79. 인증대상

80. 인증대상

81. 인증대상

82. 인증대상

83. 인증대상

84. 인증대상

85. 인증대상

86. 인증대상

87. 인증대상

88. 인증대상

89. 인증대상

90. 인증대상

91. 인증대상

92. 인증대상

93. 인증대상

94. 인증대상

95. 인증대상

96. 인증대상

97. 인증대상

98. 인증대상

99. 인증대상

100. 인증대상

한국생성본부인증원

1. 인증대상

2. 인증대상

3. 인증대상

4. 인증대상

5. 인증대상

6. 인증대상

7. 인증대상

8. 인증대상

9. 인증대상

10. 인증대상

11. 인증대상

12. 인증대상

13. 인증대상

14. 인증대상

15. 인증대상

16. 인증대상

17. 인증대상

18. 인증대상

19. 인증대상

20. 인증대상

21. 인증대상

22. 인증대상

23. 인증대상

24. 인증대상

25. 인증대상

26. 인증대상

27. 인증대상

28. 인증대상

29. 인증대상

30. 인증대상

31. 인증대상

32. 인증대상

33. 인증대상

34. 인증대상

35. 인증대상

36. 인증대상

37. 인증대상

38. 인증대상

39. 인증대상

40. 인증대상

41. 인증대상

42. 인증대상

43. 인증대상

44. 인증대상

45. 인증대상

46. 인증대상

47. 인증대상

48. 인증대상

49. 인증대상

50. 인증대상

51. 인증대상

52. 인증대상

53. 인증대상

54. 인증대상

55. 인증대상

56. 인증대상

57. 인증대상

58. 인증대상

59. 인증대상

60. 인증대상

61. 인증대상

62. 인증대상

63. 인증대상

64. 인증대상

65. 인증대상

66. 인증대상

67. 인증대상

68. 인증대상

69. 인증대상

70. 인증대상

71. 인증대상

72. 인증대상

73. 인증대상

74. 인증대상

75. 인증대상

76. 인증대상

77. 인증대상

78. 인증대상

79. 인증대상

80. 인증대상

81. 인증대상

82. 인증대상

83. 인증대상

84. 인증대상

85. 인증대상

86. 인증대상

87. 인증대상

88. 인증대상

89. 인증대상

90. 인증대상

91. 인증대상

92. 인증대상

93. 인증대상

94. 인증대상

95. 인증대상

96. 인증대상

97. 인증대상

98. 인증대상

99. 인증대상

100. 인증대상

공공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서

1. 인증대상

2. 인증대상

3. 인증대상

4. 인증대상

5. 인증대상

6. 인증대상

7. 인증대상

8. 인증대상

9. 인증대상

10. 인증대상

11. 인증대상

12. 인증대상

13. 인증대상

14. 인증대상

15. 인증대상

16. 인증대상

17. 인증대상

18. 인증대상

19. 인증대상

20. 인증대상

21. 인증대상

22. 인증대상

23. 인증대상

24. 인증대상

25. 인증대상

26. 인증대상

27. 인증대상

28. 인증대상

29. 인증대상

30. 인증대상

31. 인증대상

32. 인증대상

33. 인증대상

34. 인증대상

35. 인증대상

36. 인증대상

37. 인증대상

38. 인증대상

39. 인증대상

40. 인증대상

41. 인증대상

42. 인증대상

43. 인증대상

44. 인증대상

45. 인증대상

46. 인증대상

47. 인증대상

48. 인증대상

49. 인증대상

50. 인증대상

51. 인증대상

52. 인증대상

53. 인증대상

54. 인증대상

55. 인증대상

56. 인증대상

57. 인증대상

58. 인증대상

59. 인증대상

60. 인증대상

61. 인증대상

62. 인증대상

63. 인증대상

64. 인증대상

65. 인증대상

66. 인증대상

67. 인증대상

68. 인증대상

69. 인증대상

70. 인증대상

71. 인증대상

72. 인증대상

73. 인증대상

74. 인증대상

75. 인증대상

76. 인증대상

77. 인증대상

78. 인증대상

79. 인증대상

80. 인증대상

81. 인증대상

82. 인증대상

83. 인증대상

84. 인증대상

85. 인증대상

86. 인증대상

87. 인증대상

88. 인증대상

89. 인증대상

90. 인증대상

91. 인증대상

92. 인증대상

93. 인증대상

94. 인증대상

95. 인증대상

96. 인증대상

97. 인증대상

98. 인증대상

99. 인증대상

100. 인증대상

12기타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06200호

₩ 454,542,33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76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
| 상호 |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주)한성기술단    | 가람엔지니어링     |
| 금액 | 4,357,040,600    | 770,523,000 | 790,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시행수탁사)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
| 회사명    | (주)한국토지신탁               | 거제상동2지구(주)                     | 동부건설(주)                         | (주)문원디앤씨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4길25, 2층3,4호(고현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134, 7층709호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58220          | 195511-0248273                 | 110111-0005002                  | 110111-4074904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 개발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등록번호 : 서울 080010,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 인허가 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 완료(2026년 4월 16일 거제시 2026-건축과-16407)

※ 공급대상물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75,293.1000㎡
- 연면적 : 223,156.0972㎡
- 용도 및 세대수 : 공동주택 1,30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 지하3층 ~ 지상29층, 아파트 10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 사업일정 : 2025년 12월 24일 착공신고 완료, 2029년 5월 준공예정, 2029년 8월 입주예정
- 대지소유권 : 100% 소유권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
- 규제지역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분양대금관리방법 : (주)한국토지신탁 자체관리

※ 관련업체

- 건축주 겸 신탁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위탁자 : 거제상동2지구(주)
- 시공사 : 동부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문원디앤씨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공고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본 사업은 위탁자인 거제상동2지구(주)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거제상동2지구(주)이고, 동부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한국토지신탁이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시공사 동부건설(주)가 책임지며, 수분양자는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거제상동2지구(주)와 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제상동2지구(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견본주택(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 | ☎055-635-0101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등은 당사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                                 |
|----------|---------|---------------------------------|
| 입주자모집공고  |         | 2026.07.24.(금)                  |
| 건본주택 오픈  |         | 2026.07.24.(금)                  |
| 특별공급 접수일 |         | 2026.08.03.(월)                  |
| 일반공급     | 1순위 접수일 | 2026.08.04.(화)                  |
|          | 2순위 접수일 | 2026.08.05.(수)                  |
| 당첨자발표일   |         | 2026.08.11.(화)                  |
| 서류접수     |         | 2026.08.17.(월) ~ 2026.08.21.(금) |
| 계약체결     |         | 2026.08.24.(월) ~ 2026.08.26.(수) |

**분양문의 : 055-635-0101**

홈페이지 : <https://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com>

